

감염보호복 착용 출동 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내

- 「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」[제5판]에 의거하여 119구급대가 코로나19에 준하는 증상자는 모두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- 119구급대원이 감염보호복을 착용하였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오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◆ 코로나19에 준하는 증상자

- 발열(37.5℃), 호흡기 증상, 해외여행·거주자, 검체이송(지원), 사전 정보 수집이 어려운 자, 실신·심정지등 의식 없는 자 중 하나 해당



수원남부소방서